

[일련번호 : 9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및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□□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□□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재정법」 제6조(회계연도), 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6조(회계연도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,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양천구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에서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〔별표2〕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.

- 사무관리비(201-01) : 일반수용비, 위탁교육비, 심사수당, 피복비, 급량비, 임차료
- 공공운영비(201-02) : 공공요금 및 체세, 연료비, 시설장비유지비, 차량·선박비(유류비, 유지비 등)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2024년 구청사 \*\* \*\*정수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연도(2024년) 예산으로 차년도(2025년) 렌탈 사용료를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,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정수기 임대료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.

[표] 부적정 집행내역

적 요	계약기간	계약금액	지적사항
구청사 ** **정수기 임대료 지출	2024. 7. 1.~ 2025. 6. 30.	1,320,120원 (12개월)	- 당해연도 예산으로 다음연도 사업비 집행 - 공공운영비로 지출(적정 : 사무관리비)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